

교육만족·상담센터운영규정

제 1 조(명칭) 본 센터는 ‘동명대학교 교육만족·상담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 라 한다)’ 라 한다.
(개정 2015.2.25.)

제 2 조(목적) 본 센터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생생활 및 학사에 관한 각종 상담과 서비스, 학생민원 및 애로사항의 청취·해결과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교육 개선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(개정 2015.2.25.)

제 3 조(업무)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13.5.1.)

1. 학생상담계획 수립, 대학생활 및 학사에 관한 상담과 서비스 (개정 2013.5.1.)
2. 심리상담, 심리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분석 및 해석상담 (개정 2012.10.10, 2013.5.1.)
3. 학생생활 실태조사 및 연구책자 발간 (개정 2012.10.10.)
4. 학생 성폭력·성희롱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(개정 2013.5.1.)
5. (삭제 2012.10.10.)

6. (삭제 2016.3.28.)

7. 학생증 및 제증명 발급 관리 (신설 2012.10.10.)
8. 학생 분실물 접수 및 처리 (신설 2012.10.10.)
9. 학생 일반민원 접수 및 관련부서 이관 (신설 2012.10.10.)

10. (삭제 2016.3.28.)

11. (삭제 2016.3.28.)

12. (삭제 2016.3.28.)

13. 외부기관의 학력조회위원회에 대한 조회 (신설 2012.10.10.)
14. 학생상담결과와 검사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및 학사반영처리 업무 (신설 2012.10.10.)
15. 학생 자살예방사업 운영 (신설 2013.5.1.)
16. 교육만족도 조사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(개정 2015.2.25.)
17. 신입/재학/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업무 (개정 2015.2.25.)
18. 학부모/산업체/사회기관 등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업무 (개정 2015.2.25.)
19.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 (개정 2015.2.25.)
20.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환류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(개정 2015.2.25.)
21. 기타 부수되는 업무 (개정 2012.10.10, 2013.5.1.)

제 3 조의2 (삭제 2016.3.28.)

제 3조의3(교육만족도 조사 및 환류) 교육만족도 조사 및 환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15.2.25.]

제 4조(조직 및 운영) ① 본 센터에는 운영위원회 및 성평등상담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상담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3.5.1.,2015.2.25.)

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상담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2.10.10.,2013.5.1., 2015.2.25.)

1. 전담 및 객원 상담원의 자격은 상담전문가로서 상담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
2. 인턴(수련) 상담원의 자격은 상담전문가로서 상담분야 석사과정 재학 이상 또는 상담심리학과 졸업자로서 6개월 이상 상담경력이 있는 자(개정 2016.3.28.)

3. 상담원의 임용 또는 상담용역 계약,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센터 및 운영위원회는 업무 유관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연계 지원 및 통합체제로 운영한다. (신설 2012.10.10., 개정 2015.2.25.)

⑤ 성평등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2.10.10.)

(본조 제목 개정 2012.10.10.)

제 5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센터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3.5.1.)

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과,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신설 2013.5.1.)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3.5.1.)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 2013.5.1.)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3.5.1.)

제 5조의2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센터 운영 및 학생상담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본 센터 소관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3. 각종 상담 활동에 대한 자문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[본조 신설 2013.5.1.]

제 6조(기타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 규정 및 내규에 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폐지한다.